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03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송재봉 · 이수진 · 최혁진
김남근 · 박정현 · 이주희
김우영 · 민병덕 · 이광희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외식중개플랫폼(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외식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외식중개플랫폼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여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어 외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

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및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나.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며, 위반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 신설).
- 다. 제15조의9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0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식중개플랫폼”이란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외식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그 외식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음료 등의 외식서비스를 소비자가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와 주문·결제의 중개를 정보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사업자”란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외식사업자로서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란 이용사업자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의2에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10(영업정지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외식중개플랫폼”이란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외식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그 외식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음료 등의 외식서비스를 소비자가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청약 접수와 주문·결제의 중개를 정보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사업자”란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외식사업자로서 외식중개플랫폼을
<u><신설></u>	
<u><신설></u>	

<신 설>

<신 설>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란 이용사업자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8(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신 설>

장관이 정하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
록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10(영업정지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